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연욱의원 대표발의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·운영 지원,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세 진)